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차 교육위원회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910호)

2024.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유아교육법(제8조의2)	9
2. 평생교육법(제28조)	13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9조)	1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16.
3. 회부연월일 : 2024. 8.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 · 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 · 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Ⅲ. 검토의견

2013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민법」¹⁾에 따라 금치산·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가 도입되었는데,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무처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의 법률행위를 돕기 위해 후견인을 선임해주는 제도를 말함.

구체적으로 개정 「민법」은 후견을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의 네 가지 종류로 구분하였으며²⁾, 당사자들은 각각의 특성에

1) 법률 제10429호, 2011.3.7. 일부개정

2) 「민법」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 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 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 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 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 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①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 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 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②~④ (생략)

④ 가정법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등은 후견계약을 이행·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맞는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법원도 당사자의 청구와 본인의 상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후견의 내용과 범위를 비교적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됨.

<성년후견제도 후견유형 비교>

유형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개시사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민법 제9조)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민법 제12조)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의 후원이 필요한 경우 (민법 제14조의2)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민법 제959조의14)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나, 4촌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의 행위능력	원칙적으로 제한됨	법원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한됨	행위능력 제한되지 않음	행위능력 제한되지 않음
후견인의 권한	포괄적인 취소권, 대리권	법원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의 동의권, 대리권	법원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의 대리권	계약에서 정한 대리권

성년후견제도의 후견 유형 중 본인의 행위능력을 가장 많이 제한하는 방식은 성년후견이고 한정후견, 특정후견 순으로 행위능력의 제한이 강력함.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경우 그 내용과 범위 등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 법정후견이라고 하는데, 이에 비해 임의후견은 그 내용과 범위를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정하고 후견인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점에서 법정후견과 차이가 있음.

< 금치산·한정치산제도와 성년후견제도 비교 >

성년후견제 도입 전	성년후견제 도입 후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
(대상)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 (행위능력)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 가능	(대상)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행위능력) 원칙적 취소 가능(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행위를 정한 경우 등은 예외)
한정치산자	피한정후견인
(대상) 심신박약 또는 재산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 (행위능력) 한정치산자의 모든 법률행위에 후견인 동의 필요	(대상)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 (행위능력) 가정법원이 별도로 정한 행위만 후견인 동의 필요

한편, 개정 「민법」은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자를 인용한 법률의 개정 지연에 따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법 시행 후 5년간(2018년 7월 1일까지 법령정비를 위한 유예기간 부여) 기존 법률에서 금치산·한정치산자를 인용한 경우 성년후견·한정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³⁾를 두었고, 이에 따라 이후 진행된 법률의 정비과정에서 기존의 결격사유에 있는 금치산·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만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음.

그러나,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에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법원이 별도로 정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만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모든 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종전 한정치산자와는 성격이 다름.

따라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검증 없이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기계적·영구적으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피후견인 행위능력의 “획일적·포괄적 배제”를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제의 취지에 반하고,

3) 「민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0429호, 2011. 3. 7.)

부칙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② 제1항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5년의 기간에 한정하여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후견선고라는 사실 자체에서 직무부적격이 당연히 증명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의제하여 기계적으로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결부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⁴⁾.

특히, 성년후견제도가 네 가지 후견 유형으로 구분되어 사무처리 능력의 제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후견 형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 역시 청구취지에 기속되지 않고⁵⁾ 당사자의 특성에 맞는 후견 유형을 개시할 수 있다는 점과, 한정후견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의 사무처리 능력을 고려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점,

후견심판에서 평가대상이 되는 의사결정능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동적이고 의사결정 대상별로 달리 판단될 수 있으며 치료 등으로 상태가 호전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별 법률에서 피한정후견인 해당 여부를 일률적으로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됨.

4) 박준모, “피후견인 결격조항 폐지의 필요성과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제93호, 2019.12.27., p.3

가정법원의 심판대상은 후견이 필요로 한 것으로 주장되는 사람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되었는지(피성년후견인), 부족한 것인지(피한정후견인) 여부일 뿐, 가정법원은 후견 개시 선고를 함에 있어 결격조항을 가진 약 450개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자격 조건이나 인허가 사유, 임직원으로서의 적격성 등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음.

5) 위와 같은 규정 내용이나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청구 취지와 원인, 본인의 의사, 성년후견제도와 한정후견제도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어느 쪽의 보호를 주는 것이 적절한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절차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한정후견의 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의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성년후견 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도 성년후견의 개시를 희망한다면 법원이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고,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고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0스696)

참고로, 「법령입안심사기준」(2023)에 따르면 법제처는 피후견인을 각종 영업 등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와 모순되며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 제한의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 여부만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규율함에 따라 개별법상 자격·영업 등의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도 해당 직무에서 포괄적으로 배제되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임.

아울러, 민법상 행위능력과 개별법상 직무수행능력을 구분하여 결격사유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개별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자격시험, 인허가 요건, 그 밖의 검증수단을 통해 직무수행능력 판단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에는 피후견인 결격사유를 두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개별법에서 검증수단이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자격이나 업종의 특성 및 공익성의 요구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후견인 결격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대체 결격사유로 ‘정신적 제약’ 등을 추가로 규정할 수도 있다는 의견임⁶⁾.

국회 법제실 역시 피한정후견인에게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긍정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피한정후견인은 가급적 결격사유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⁷⁾.

6) 법제처는 이 경우에도 공익성이 중대한 경우라면 결격사유와 행정처분을 동시에 규정함으로써 사전·사후 규제가 되도록 하고, 공익 관련성이 낮은 경우에는 행정처분만 규정하여 사후 규제수단만 두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현행 「유아교육법」, 「평생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직무수행능력의 수준과 관계없이 피한정후견인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 평생교육기관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음.

제정안은 해당 3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평생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경우 기존에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였는데, 한정치산자와 피한정후견인의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용어만 변경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다만, 교육기관의 특성상 공익 관련성이 높고 그 설치·운영에 있어 전문적 역량과 상당한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별법이 별도로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판단 절차나 사후적인 규제수단 등을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7)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24.5, p.370

1. 유아교육법(제8조의2)

현행 「유아교육법」은 유치원 설립·운영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피한정후견인도 유치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현행	개정안
제8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다.	제8조의2(결격사유) ----- ----- ----- -.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2. ~ 9. (생략)	2. ~ 9. (현행과 같음)

「유아교육법」 제8조의2 각 호는 유치원 설립·운영의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⁸⁾,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해당 여부 외에

8) 「유아교육법」

제8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7. 제32조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8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정신질환자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에 대하여 유치원 설립·운영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범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정 수준의 직무수행능력과 도덕성·윤리의식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아울러 「유아교육법」 제30조제1항⁹⁾은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 유치원의 설립·경영자에 대하여도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직무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한 사후적인 조치 방안 역시 마련되어 있음.

다만, 유치원에 재학하는 유아의 발달단계 특성상 일반 교육기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는 점, 유치원 설립 경영자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지정된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치원의 정원·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 재정지원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유아 및 학부모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법 제 32조¹⁰⁾에 따라 유치원 설립·경영자가 고의

9) 「유아교육법」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 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유치원이 시설·설비,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 원비 인상률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3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유치원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장 또는 그 설립·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0) 「유아교육법」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 ① 관할청은 유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3회

· 과실로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등에는 유치원의 운영이 정지되거나 폐쇄되어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치원 설립·운영자의 직무수행능력은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교육부는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라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로서,

유치원 설립·운영자는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외에 심신상태 및 사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다른 장치가 없고, 유아의 연령·발달단계 특성상 타 학교급 또는 기관에 비해 특히 안전 및 보호분야의 섬세한 판단 및 지원이 필요하므로 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참고로, 유사한 취지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피한정후견인의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근무를 금지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상의 규정을 삭제하려는 일부개정법률안¹¹⁾에 대하여,

이상 위반한 경우

2의2.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2의3. 교직원 등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교직원 등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② 관할청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치원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 관할청은 유치원이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유치원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원장 및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와 밀착하여 보육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바, 피한정후견인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영유아 보호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한 바 있음.

11)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6425호)

2. 평생교육법(제28조)

현행 「평생교육법」 제28조는 피한정후견인이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피한정후견인도 평생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현행	개정안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u>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2. ~ 6. (생략) ③ ~ ⑤ (생략)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1. 피성년후견인</u> 2.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¹²⁾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고,

12)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교육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함.

또한, 「평생교육법」은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제30조),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제31조),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제32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제33조),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제35조),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제36조) 등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제20조), 시·군·구평생학습관(제21조) 및 읍·면·동평생학습센터(제21조의3) 등의 평생교육기관을 규정하고 있고, 타법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평생교육기관 역시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는데,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의 유형에 따라 보고·등록·인가·신고 등 설립절차, 공시대상정보, 학점·학력·학위 인정 여부 등이 달라지는바, 평생교육시설의 특성에 따라 설치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와 직무수행능력의 수준 또한 상이할 것으로 생각됨.

〈평생교육기관의 종류〉

기관 유형		근거 법령	설립 절차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30조~제38조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에 보고·등록·신고·인가 등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법」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등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시장·군수·구청장의 설치·지정 등
타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평생직업교육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도교육감에 등록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노인복지법」	국가·지자체의 설치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국가·지자체의 설치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지자체의 설치 시·도지사의 지정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	국가·지자체의 설치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국가·지자체의 설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
	도서관	「도서관법」	국가·지자체의 설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 등록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시·도지사 인가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에 등록
	주민자치센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장·군수·구청장의 설치

자료: 자체 제작

<평생교육시설의 학력인정여부>

시설유형		학력인정여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
		학력미인정
		전문대학 학력인정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력미인정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학력미인정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학력미인정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학력미인정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학력미인정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학력미인정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학력미인정

자료: 자체제작

따라서 설치하고자 하는 평생교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피한정후견인이 평생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은 과도하게 피한정후견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제정안을 통해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법은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해당 여부 외에는 범죄 경력 등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¹³⁾ 사전적으로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수단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¹⁴⁾, 사후적으로 시설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설치·운영자를 규제하는 수단은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됨.

교육부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13) 「평생교육법」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①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14) 「평생교육법」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③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피한정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평생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피한정후견인의 권리를 제한하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평생교육기관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거나, 학습자를 대상으로 비용을 징수하는 교육기관으로서,

평생교육기관 설치자는 교장 또는 교사를 겸임하는 경우가 다수 있고, 기관의 재정관리 및 교육과정 편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으므로 설립자의 자격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9조)

개정안은 피한정후견인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을 등록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중 피한정후견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u>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u> 2. ~ 7. (생략) ② (생략)	제9조(결격사유 등) ① ----- ----- ----- -----. 1. <u>피성년후견인</u> 2.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학원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¹⁵⁾ 학원의 설립·운영자에게는 일정한 책무가 부과되고 학원을 설립·운영하기 위하여는 「학원법」 제6조¹⁶⁾에 따라 일정한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함.

1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 학원설립·운영자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절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교습자와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할 때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절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

또한, 「학원법」 제9조17)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는데, 결격사유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여부와 파산선고 또는 법령 위반 경력 등이 규정되어 있음.

한편, 「학원법」 제2조의2에18) 따르면 학원의 종류에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의319) 및 별표 2에 따라 각 학원의 종류는 다시 다음과 같은 분야·계열로 구분됨.

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6.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 6의2.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7.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1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학원의 종류)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교과교습학원: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평생직업교육학원: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교습과정의 분류 등) ①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②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2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하여야 한다.

<학원의 교습과정>

종류	분야	계열	교 습 과 정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정보교과, 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및 논술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정보	정보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기타	기타	그 밖의 교습과정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정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용·미용, 식음료품(조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산업서비스	숙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일반서비스	애견 미용·훈련,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사무 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국제화	국제	성인 대상 어학, 통역, 번역
	인문사회 · 자연	인문사회·자연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 고시
	기예	기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에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독서실	독서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이와 같이 학원은 그 종류·분야 및 계열이 다양하여 각 학원이 대상으로 하는 학생의 연령·지적 수준이 상이한바, 학원의 설립·운영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와 직무수행능력의 수준 또한 달라질 것으로 생각되고 단순히 후견선고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학원의 설치·운영을 일률적·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피한정후견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학원법」 제4조는 학원설립·운영자가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²⁰⁾,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설비 기준 외에도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정원, 강사명단, 교습비 등의 사항을 적고 원칙(院則)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²¹⁾,

2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 학원설립·운영자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절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교습자와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할 때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절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②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칙(院則)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원설립·운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학원의 명칭과 위치
3.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학원설립·운영자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법 제16조), 행정처분(법 제17조), 교습비등의 반환(제18조), 학원 등의 폐쇄(법 제19조) 등의 사후적 제재수단이 마련되어 있어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삭제하더라도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²²⁾.

교육부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피한정후견 선고만으로 평생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거나 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학원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비용을 징수하는 교육기관으로서,

학원의 설립자는 원장 또는 강사를 겸임하는 경우가 다수 있고 재정 관리 및 교습과정 편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으므로

-
4. 정원
 5. 강사명단
 6. 교습비등
 7. 시설과 설비
 8. 개강 예정 연월일

③ 제2항의 원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원의 명칭 및 설립목적과 위치에 관한 사항
2. 수강자의 교습과정별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습과정 및 교습일시에 관한 사항
4.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
6.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2)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관없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적 자유의 제한은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입장임(2001헌마614 등).

설립자의 자격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193